

# 직장예비군 육성·지원 운영내규

제정 2021. 7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지대학교 내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예비군 육성”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 임무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.
2. “예비군 지원”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·재정 등의 지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내규는 상지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에 적용한다.

**제4조(직장방호 및 주요 시설운용)** ① 예비군, 민방위, 보안요원 등의 교직원 가용자원을 통합하여 잠정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직장방호 임무를 수행한다.

- ② 종합상황실 및 본관 2층 회의실을 각종 기자재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.
- ③ 교내 방범용 CCTV, 구내식당, 한방병원, 기타 편의시설 등을 직장 방호용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.

**제5조(관련근거에 따른 지원범위)** ① 「통합방위법」 제9조 (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)에 따른 예비군 육성·지원(직장방호)

- ② 「통합방위법」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직장방호 임무수행 시의 차량, 급식, 의료, 홍보, 기타 필요사항 및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지원
- ③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, 장비 및 물자 지원, 직장 방호에 필요한 제반사항, 지역주민 (우산동) 유대강화 및 홍보에 대한 지원
- ④ 「예비군법」 제8조,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, 제23조, 제24조에 따른 예비군 대원의 직장방호 임무중 재해, 부상, 사망자에 대한 보상 및 치료 (가료) 지원

**제6조(직장예비군 육성지원 협의회 구성 및 임무)** ①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33조에 의거 ' 81.1.1. 상지대학교 직장예비군중대 창설에 따른 협의회 구성

② 협의회 구성은 총장, 교육부총장, 보직교수 (3), 한방병원장, 행정지원처장, 시설팀장, 예비군연대장, 학군단장등 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의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운영은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시 의장 권한으로 소집한다.
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평시 교육훈련 및 예비군부대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

☞ 예비군법 제32조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, 장비 및 물자 지원

2. 전·평시 직장방호 임무수행에 대한 지원 사항 (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 근거)

3. 불시동원 예비군, 민방위대원 소집에 대한 사항 (급식, 의료, 기타 요구사항)

4. 직장방호에 필요한 사항

5. 작전지속 및 기타 제반 사항

**부칙**

이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